##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888 발의연월일: 2024. 12. 24.

발 의 자:김교흥·서영교·이용우

강득구 • 이재강 • 신영대

김성환 • 윤준병 • 이학영

김문수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에게 국회 회기 중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 경호 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회 경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국 회의장이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경호업무는 의 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질서를 유지해야하는 경찰공무원이 국회의장의 지휘가 아닌 서 울경찰청의 지휘를 따라 국회의원 및 보좌진, 국회직원의 경내 출입을 제지하는 등의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였음.

이에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의장의 지휘를 따를 것을 명확히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위기상황에서도 원활한 국회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제144조제4항 및 제5항).

법률 제 호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국회 경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장의 지휘를 우선하여 따라야 한다.
- ⑤ 제4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 ~ ③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④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국회 경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장의 지휘를 우선하여 따라야
	한다.
<u>&lt;신 설&gt;</u>	⑤ 제4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
	<u>다.</u>